

분당중앙교회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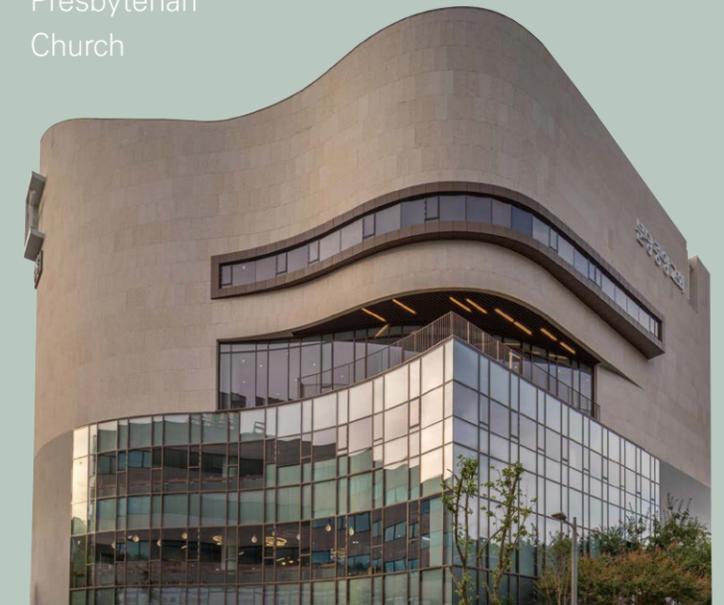
2021년 10월 교회 설립 30주년의 맞이했던
분당중앙교회의 “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사명이 드디어 실행단계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연금 지원 사명은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선교사 지원 부문에서 그동안 사역 중심의 지원에서
사람 중심의 지원으로 관점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 사명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연구의 결과대로 단계별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 본인의 유고나 교회의 재정문제 등으로 임의 중단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분당중앙교회는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사명으로 알고,
“빵과 함께 복음을”이라는 사명 아래 “인류에 실천”을 실현하고자
수년 내 기도하며 준비하고, 추가로 선교사연금지원 사역을 확대하려 합니다.
총 최소 1000명 이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과 은혜의 심정으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선교사 연금지원 모집요강 (2022년)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입니다

Boondang
Central
Presbyterian
Church



해외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대상 공모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이다” 라는 목회철학과 인류에 실천이라는 비전 아래 해외선교사 가정에 대한 연금지원을 실시, 은퇴 후 노후보장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여 장기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분당중앙교회의 <해외선교사 500명 연금지원> 실행계획에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45세(1977년생) 이하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한 해외 파송 선교사	모집인원 500명	지원규모 20년 납입 (1가정 월 10만 원×240개월) *10년 거치 30년 경과시점 연금 개시	접수기간 2022.1.10.(월) 오전9시 ~2022.2.19.(토) 오후6시 (40일간)
---	---------------------	--	--

- 접수방법**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www.bdc.or.kr)
- 접수서류**
- ① 분당중앙교회 후원선교사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② 이력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③ 자기소개(홈페이지 다운로드)
 - ④ 소속선교단체 소속증명서 및 주파송교회 소속증명서 각각 1부
 - ⑤ 소속지부 선임선교사 또는 동료선교사 추천서 1부
 - ⑥ (국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선교지 주거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① 서류접수는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bdc@bdc.or.kr)
(Fax/전화/SNS 접수 불가)
 - ② 접수 서류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③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bdc@bdc.or.kr)
- 서류심사절차**
- ① 선교위원회 서류접수 확인
 - ② 교회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500가정 선발
 - ③ 당회 보고 선발 명단 최종 승인
- 선발명단 통지** 분당중앙교회 홈페이지 및 신청서 명기된 개별 이메일 통보(2022년 3월)

선교사 연금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주요 자격요건

- 만 45세 미만(주민등록 기준)
- 선교사의 노후 보장을 감안한 30년간의 불입 기간 설정
- 연간보고 및 추가 사역보고(필요 시) 필수
- 교회 후원선교사로 등록 및 현지 활동 관련 요청사항 수행
- 교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선교단체의 보증 필수
- 합동 교단 또는 타 교단 소속의 파송선교사여야 함
* 합동교단 최대 60% 내외 선발, 그 외에는 타 교단에서 40% 내외 선발 예정



장기선교사 후원에 관한 협약서 주요내용 (*전문 별도)



제1조 (취지) 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국외에서 장기간 선교사역에 헌신한 선교사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계좌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고, 해당 선교사가 정년 은퇴 후 정한 시점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후원방법)

4. 선교사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해 교회가 매월 납입하는 후원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선교사의 연금수급은 후원 취지 실현을 위해 후원 개시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에 개시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교사의 의무사항)

2. 선교사는 후원을 위한 계좌를 최소 30년간 유지하며, 중도에 임의로 해지, 변경, 수령개시신

청, 양도 등 후원 취지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추가 납입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선교사는 매년 12월1일까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1년간 수행한 사역의 보고 및 다음 해를 포함한 장차의 사역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회의 파송증명도 첨부한다.

제4조 (후원의 중지)

1. 선교사가 제3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는 후원을 중지한다.

제6조 (기타사항)

1. 교회는 후원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선정, 운용되게 하고, 선교사는 그에 따른다.